

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Office of Tax and Revenue



날짜: 2008년 8월 22일

수신: DC 담배에 관련된 모든 도매업자

제목: 담배 소비세 증가

게시 번호: 2008-08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콜럼비아 특별자치구의 담배 소비세는 DC Code section 4702402(a)에 따라 담배 20개비 한 갑당 1달러에서 2달러로, 담배 25개비 한 갑당 1.25달러에서 2.5달러로 증가합니다. 새로 도입된 소비세율은 이전 납세인이 찍힌 재고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워싱턴 DC지역의 자동판매기 담배,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도, 소매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납세인지 담배에 적용됩니다.

Floor tax의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 1일 영업 시작 이전에, 워싱턴 DC인이 찍힌 모든 재고, 납세 인지의 재고를 수거해야 하며, Floor tax 신고서와 지침서를 동봉합니다. 담배 Floor tax 신고서와 세금을 2008년 10월 21일 까지 워싱턴 DC 사서함 556, 세무서(the Office of Tax and Revenue) 감사과(Audit Division)담배세 집행부서(Cigarette Tax Enforcement Unit, P.O. Box 556, Washington DC 20044)로 보내주십시오.

Floor tax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Floor tax 납세기한인 2008년 10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벌금 및 이자가 부가될 것이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hapter 24의 위반 또는 Chapter 24[DC Code, 2001 Ed. Section 47-2404(f) 및 47-2422(a)]에서 선포한 법규에 따라 담배 판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The Office of Tax and Revenue) 감사과(Audit Division)는 2008년 10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워싱턴 DC의 담배 판매 면허가 있는 일부 도매업자를 선택해 해당 업자의 담배 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선택된 도매 업자는 감사과의 대표로부터 사전통보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 담배 납세인의 묶음(roll) 또는 낱장(sheet)을 2008년 9월 15일부터 District of Columbia Office Finance and Treasury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제품에 인지가 찍히더라도,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워싱턴 DC의 담배세법에 따라,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손상되었거나, 기존 인지가 찍힌 판매 불가능한 담배는 2008년 9월 30일 혹은 그 이전에 담배 제조업자에게 반송이 되어야, 워싱턴 DC 재무과(Treasury)의 크레딧(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에는 Floor tax 신고서 유용한 질의응답(FAQ) 형식의 참고자료가 동봉되었으며, 본 통지서 사본 및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FAQ 섹션은 웹사이트 www.taxpayersevicecenter.com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Floor tax 신고서와 지침서가 필요한 분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의 변경 사항에 관련된 질문은 세무서(The Office of Tax and Revenue) 감사과(Audit Division) 전화 (202)402-6602로 문의하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